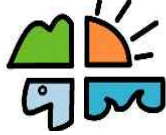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176호 2018년 11월 22일(목)

공 고

-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 입법예고 2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 입법예고

「속초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경관 조례

2. 개정이유

경관지구 외 일반건축물일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자원 훼손(차폐) 방지 및 개방적인 조망환경 조성이 어려우므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지구 외 일반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안 제26조)

나. 제36조는 규제의 재검토 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017년)를 통해 삭제가 권고된 사항이므로 본 조 삭제(안 제3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2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 연락처 : 033-639-2685(FAX 033-639-231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033-639-26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 중 “1,000m²”를 각각 “1,0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이상인”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100세대이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지상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3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 ----- -----.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 --.
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u>1,000m²</u> 미만의 건축물	가. ----- <u>1,000제곱미터</u>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u>1,000m²</u> 이상의 건축물	2 . ----- ----- <u>1,000제곱미터</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미관지구의 5층 <u>이상</u> 이거나 연면적 <u>2,000제곱미터</u> <u>이상</u> 인 건축물	4. ----- <u>이상</u> 또는 ----- <u>이상의</u> ----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u>100세대</u> 이상의 공동주택	5. 「주택법」 제15조 ----- <u>100세대 이상</u> -----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지상 <u>11층 이상</u> 또는 연면적 <u>5,000제곱미터</u> 이상의 건축물

6. (생 략)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25조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제26조 사회기반 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폐지 등)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체

□ 경 관 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 관 법 시 행 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